

재활용분야 질의 응답

페트 맥주병과 모판 재활용 처리방법

Q

1. 페트병 재활용처리업체 소개

페트 맥주병에 재활용 분류표기가 되어 있는데도 재활용이 안된다며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 않아 많은 양이 쌓여있습니다. 페트 맥주병 재활용처리업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모판 재활용 가능토록 제작

농촌지역에 파손된 플라스틱 모판이 다량으로 발생되어 매립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취급업체를 소개해주시기 바라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면 재활용가능 재질로 제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재활용업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결과, 남원시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 전북의 재활용업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PET 재활용업체

- 원일수지: 전주/063-212-8875
- (주)이엔코리아:진안/063-433-8815

2. LDPE 재활용업체

- 용진상회 : 임실/063-640-1114
- 태성알엔피 : 전주/063-221-4941
- 승원산업 : 정읍/063-530-7335

* 참고로, 남원시에 소재한 재활용업체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 명성화학(폐PVC재생) : 063-633-8049

Q

사무용소모품 재활용사업 지원

현재 소프트웨어 업체의 마케팅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환경사업 분야로 진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개인사업으로 “사무 관리 소프트웨어와 연계된 사무용 소모품 재활용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대상은 복사 및 프린터 용지, 프린터 및 프린터토너, 보드마카 등이며, 이중 가장 큰 재활용 대상은 복사 및 프린터 용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활용 시설 및 사무실임대 등 “창업지원자금” 용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런지요? 용자지원 안내 란을 보니,

1. 벌써 2004년 자금지원이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2. 자격 조건이 “재활용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던데, 신규 창업을 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지.
3. “담보”는 어떤 것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시중 은행)”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이 사실 포괄적이라 이메일로 답 해주시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자,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고 여쭙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사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복사 및 프린터 용지 재활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5항<재활용제품>에(시행규칙 별표1 참조)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창업지원대상자

입니다.

단, 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창업지원분야와 융자 지원분야가 있습니다.

- 공사 홈페이지 “재활용창업지원”과 “재활용산업 육성지원”을 참조하신 후 연락 바랍니다

: 창업지원 032-560-1642, 융자지원 032-560-1664



페비닐의 중국 수출에 관한 문의

페비닐을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출되는지요? 가공방법, 처리방법 등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 해외사업팀입니다.

문의하신 페비닐의 중국수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수출용으로 공급가능한 페비닐은 세척되지않은 상태의 농업용페비닐의 미선별품 또는 파쇄압축품 두가지입니다. 미선별품은 이물질이 제거되지않은, 수거된 상태 그대로의 페비닐이며 파쇄압축품 역시 선별되지않은 페비닐을 압축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국당국에서 공사의 페비닐에 대하여는 통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업무를 추진하시는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분리배출표시

사탕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사탕수입시 포장지 표면에 분리배출표시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봉지사탕인데 일본회사에서 일본식 분리배출표시가 포장지에 부착이 되어있는데 한국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겉포장지는pp이고 날개사탕 포장지는 pet라면 분류배출표시 도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리배출표시는 국내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²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cm² 미만)인 포장재는 표시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용기

의 경우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의 경우 적용예외)

겉 포장지는 PP, 날개 포장은 PET로 하되, 겉포장지가 밀봉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 포장재(날개포장)의 재질은 겉포장에 일괄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도안은 EPR홈페이지(www.epr.or.kr)-분리배출표시제도-도안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지환경부담금

현재 저희 업체는 백화점등 유통업체에 제품(김치류)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납품하는 제품중에 소포장 10개 묶음(80g*10EA)을 세트(날개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개당 80g)을 묶어서 포장한 비닐백에 대한 환경부담금 관련하여 최종 부담자가 해당업체인지 아니면 이를 업체가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업체는 포장 제작시 별도의 환경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치에 사용된 포장재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류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으로 식품회사가 사용 포장재에 대하여 재활용의무가 있습니다.

환경부담금이란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우리 공사가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일부 수입품을 제외하고 귀사와 같은 식품업체에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납부하고 계신다는 환경부담금은 귀사와 포장재 업체간에 포장재 납품가격 상의 항목으로 생각되므로, 우리 공사 관할 지사에 보다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DPE하수관 재생원료 구함

중국에 수출입을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중국 파트너가 하수관 재생원료가 필요하다고 연

락이 왔는데...이쪽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당 재생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나 업체를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문의하신 하수관 재생원료 공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에서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재생원료는 농촌폐비닐의 미선별품과 파쇄압축포입니다. 둘다 세척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HDPE 원료도 다량 공급가능하지만 문제는 중국쪽에 수출용으로 공급해 드릴 경우 공사 폐비닐에 이물질이 다량함유되어있는 관계로 중국 통관이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외 세척된 재생원료(펠렛,플러프)는 국내 수요량이 많은 관계로 수출용으로 다량 공급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부실한회사 지원금 용자

폐기물업체에 지원해주는 용자금이나 지원금은 어떤기준으로 준다는 건지 부실한 설비를 갖추고 신고만 하면 주는 겁니까. 제대로 실사를 하고 주는게 아닙니까.

공사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용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사가 상기에 명시한 재활용사업자에 해당하면 용자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사가 용자받을 수 있는 자금은 시설자금과 경영안정자금(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이내)이 있습니다. 신청하실 경우 구비서류 중에 인/허가서가 있으므로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 인/허가 사항이 완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홈페이지의 재활용산업용자지원-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신후 작성하시고 아래의 첨부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가까운 지사나 본사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용자신청시 제출서류

1. 용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건축허가서(공장건축시) 4.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5. 공장등록증(혹은 건축물대장) 6. 처리업허가증,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중 해당 증명서 7. 시설세부견적서 및 도면(시설설치시) 8.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9. 최근결산재무제표

참고로 용자신청일 이후에 설치완료된 시설은 용자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설치전에 용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금에는 담보가 필요하며 금융기관과의 채권설정이 완료되어야만 자금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를 적법 처리 시스템

저희 회사가 이번에 공장을 평택에 만들었는데요...본사에서는 이미 폐기물 적법시스템에 등록이 되었는데..평택에 있는 공장에서도 따로 폐기물 적법시스템에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법인번호는 같고 사업자 등록번호만 틀립니다.

평택공장의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경인지방환경청에서 본사와 별도로 받을 경우 본사와 별도로 시스템인증신청후 승인을 받으셔서 적법처리시스템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폐비닐 재활용 질의

자원재생공사에서는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을 수거하여 재생고체연료(RDF)로 재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생공정과 재생 온도 그리고 재생시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세음과정에서의 폐수 발생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생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실제 수요처 등도 알고 싶고, 폐비닐등을 재이용하여 재생고체연료를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한국자원공사에서는 영농 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와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직접 고체 연료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체연료의 품질 인증 업무는 우리공사 기술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그의 환경규제등의 단속 및 적발 업무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폐지 파기후 재활용 가능한지

은행업이라는 것이 종이로 된 각종 양식을 많이 사용하는 회사이다보니 그 종이를 폐기하는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체의 파기소나 소각장이 있어서 그곳에서 파기를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종이를 재활용 할 수도 있는데 소각하는 것도 자원낭비다 싶어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일정금액의 비용이 들더라도 종이를 파기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요. 물론 저희 직원이 파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산에 위치해 있으며 부산 인근에 그런 곳이 있다면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서류 등의 종이의 재활용을 위한 님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종이 1톤(1,000 kg) 생산을 위하여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재활용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지회사에 가면 용해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종이를 넣으면 물에 풀어져 서류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고, 펄프처럼 종이원료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따라서 인근 제지공장에 종이를 싣고 가서서 직접 용해로에 넣는 것을 확인하시든지, 한국자원재활용협회(www.krra.com), 재향군인회나,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www.ikh.or.kr), 등에 매각하고 용해 확인서를 받으셔도 되겠군요.



폐지 이용 산업용 완충재 생산시설 구축

본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해 있는 그린PMP 이범우(대표)입니다. 당사에서는 2003년 7월“자

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규제” 시행에 따라 환경부(폐기물정책과)에서 대체품목으로 지정한 펄프몰드 식품용기의 생산플랜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국내 2개사에서 가동중인 최신 자동화 펄프몰드 설비(일본 수입설비, 국내특허)와 생산성능이 동일한 펄프몰드 자동성형기에 대한 특허결정(2004년 2월 16일, 출원번호 10-2003-0083320)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본 설비는 폐지류를 재활용 원료로 사용하여 산업용 완충재(CASE) 생산이 가능하기에 귀 공사의 재활용 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식품용기 생산라인은 천연펄프(재활용 가능)만을 사용하며, 완충재 생산라인은 폐지류만을 사용하기에 자금 지원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하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귀 공사의 재활용산업육성자금(시설설치, 경영안전자금)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사에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31조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시고자 하는 폐지 재활용사업은 융자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천연펄프를 이용한 설비라인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7년상환, 경영안전자금은 2년거치 3년상환이며 금리는 변동금리로 현재는 4.87%입니다. 대출방식은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방식과 동일하므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채권협약이 완료되어야만 융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시설자금 신청시 사전에 융자취급금융기관(지점포함)을 선정하여 사전에 담보에 관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융자신청일 이전 설치완료된 시설은 융자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창업업체의 경우 시설자금 융자신청액의 20%범위내(한도 5억원이내)에서 경영안전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